



새롭게 시작하는 10년,
함께 만들어가는 세종

주민조례청구

온라인으로

쉽게 할 수 있습니다.



주민e직접 플랫폼 www.juminegov.go.kr



세종 특별자치시의회
SEJONG CITY COUNCIL

법률제정 및 주요내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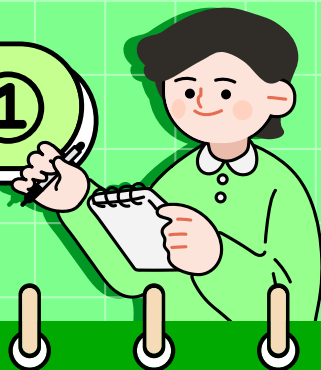
청구 근거 마련

-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(2022.1.13.시행)
-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(2022.1.13.시행)

달라지는 주요내용

청구연령 하향조정	서명요건 완화	청구절차 간소화	심의·의결 이행력 강화	청구 간편화
19세 → 18세	1/70 → 1/100	지방자치단체장 → 의회의장	규정없음 → 1년 이내	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

주민조례청구 알아보기 ①



주민조례청구란

- 우리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·개정·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

청구권자 자격

-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(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)
 - ▶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- ▶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주민조례청구 알아보기 ②



청구 서명요건

- 청구권자 총수(286,517명)의 1/100 (2,866명) 이상의 서명
※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주민수 공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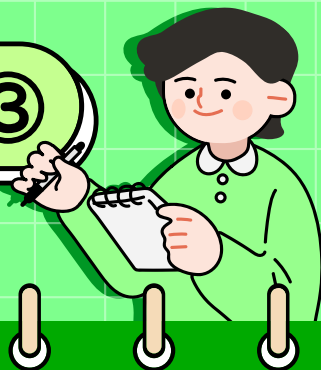
청구절차 간소화

-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 청구

청구 제외대상

-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-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사항
-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
-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주민조례청구 알아보기 ③



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

- 수리된 주민청구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·의결
- 지방의회 임기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, 차기 지방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

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

-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 조례 청구, 청구인 서명, 증명서 발급 결과 조회
- 주민e직접 플랫폼 사이트 : www.juminegov.go.kr

주민주례청구 진행절차



1	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	청구인대표자 → 의회의장
2	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	의회의장 → 청구인대표자
3	서명 요청	대표자 또는 수임자 • 6개월 이내
4	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	청구인대표자 등 • 제출 : 10일 이내 • 공표 : 5일 이내
5	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	공표한 날부터 10일간
6	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	(의회운영위원회) • 심사·결정 : 14일 이내 • 보정기간 : 30일 이내
7	청구수리 또는 각하	(의회운영위원회) 의회의장
8	의회 부의 및 의결	(의회의장) • 부의 : 30일 이내 • 의결 : 1년 이내



새롭게 시작하는 10년,
함께 만들어가는 세종

주민과 세종시의회가 함께 만드는 주민조례청구



우리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



세종 특별자치시의회
SEJONG CITY COUNCIL